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분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기업경영 지원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및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지역통계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표준화에 관한 사항, 협력 및 기술지원, 지역통계 제공 등 지역통계사무 소관을 종전 통계정책국에서 조사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조사관리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역통계기획팀을 신설하고, 통계청과 소속기관(통계교육원, 지방통계청)의 ‘운전서기보’와 ‘방호서기보’를 과학기술직군 또는 행정직군의 해당 직급과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지방통계청 관할구역 중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통계법 개정 사항에 포함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업무의 명시, 그 외 조사명칭 및 용어, 수행업무 현행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27. ~ 1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9호 중 “신남방 및 신북방”을 “아주지역”으로 한다.

7. 국정협력 및 정책연구 등 총괄·운영

8. 국정운영·시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제2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0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계작성 및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제3조제5항제2호 중 “연간 지역산업연관표”를 “지역산업연관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중 “지역소득계정”을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의”로 한다.

제4조제5항제5호의2 중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를 “이민자체류 실태및고용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사교육비조사”를 “초·중·고사교육비조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조사기획과·인구총조사과·표본과 및 스마트조사센터

를”을 “조사기획과·인구총조사과·표본과·스마트조사센터 및 지역통계기획팀을”로, “보한다”를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지역통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동북지방통계청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호남지방통계청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강원지방통계지청의 위치란 중 “강 원 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강원지방통계지청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원주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강릉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영월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전주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전주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군산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남원사무

소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688”을 “685”로 하고, 일반직 계 “687”을 “684”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51”을 “150”으로 하고,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2”를 “201”로 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농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77”을 “76”으로 하고,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농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76 다음에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7”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를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3”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89”를 “6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88”을 “685”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53”을 “152”로 하고,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5”를 “204”로 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농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69”를 “68”로 하고,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농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68 다음에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7”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를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3”를 삭제한다.

별표 4 행정서기·통계서기·전산서기·농업서기·공업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6 다음에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3”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를 삭제하며, “방호서기보 1”를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16”을 각각 “1,402”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89”를 “88”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56”을 “25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02”를 “398”로 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98”을 “493”으로 하고,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93 다음에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33”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19”를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7”를 삭제하며, “방호서기보 8”를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16”을 각각 “1,402”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89”를 “88”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80”을 “277”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98”을 “394”로 하며, 행정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 전산서기 · 사서서기 · 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78”을 “473”으로 하고, 행정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 전산서기 · 사서서기 · 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73 다음에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 사서서기보 · 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33”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19”를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7”를 삭제하며, “방호서기보 8”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과 별표2의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개정하는 사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역통계기획팀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역통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역통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5급 2명, 6급 4명, 7급 4명, 8급 6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4(기획조정관) ①·② (생략)	제1조의4(기획조정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③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정책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	7. <u>국정협력 및 정책연구 등 총괄·운영</u>
8. <u>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 상황 확인·점검</u>	8. <u>국정운영·시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u>
9. ~ 12. (생략)	9. ~ 12.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신남방 및 신북방 통계에 관한 사항</u>	9. <u>아주지역</u> ----- -----
제2조(통계정책국) ①·② (생략)	제2조(통계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삭 제></u>
9. <u>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0. <u>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④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u><삭 제></u>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 ⑨ (생 략)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마이크로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통계작성 및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u>
⑪ ~ ⑭ (생 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3조(경제통계국) ① ~ ④ (생 략)	제3조(경제통계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연간 지역산업연관표</u> 개발 및 관련 조사 수행	2. <u>지역산업연관표</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⑥ 소득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지역소득계정</u> 개선에 관한 사항	7. <u>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 조표의</u>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⑦ ~ ⑫ (생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4조(사회통계국) ① ~ ④ (생 략)	제4조(사회통계국)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고용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u>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의</u> 기획 및 실시	5의2. <u>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 사</u>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복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사교육비조사</u> 의 기획 및 실 시	3. <u>초중고사교육비조사</u> ----- --

4. (생략) ⑧·⑨ (생략) 제5조(조사관리국) ① (생략) ② 조사관리국에 <u>조사기획과·인구총조사과·표본과 및 스마트조사센터</u>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u>보한다</u>. ③ ~ ⑦ (생략) ⑧ 삭제 <u><신설></u>	4.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과 같음) 제5조(조사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u>조사기획과·인구총조사과·표본과·스마트조사센터 및 지역통계기획팀</u>을 ----- <u>보하고</u>,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u>보한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⑨ <u>지역통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u> 2. <u>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u> 3. <u>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u> 4. <u>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88</u>	.	<u>685</u>	-3	
일반직 계	.		<u>687</u>	.	<u>684</u>	-3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		<u>151</u>	.	<u>150</u>	-1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		<u>202</u>	.	<u>201</u>	-1	
	.			.			
	.			.			
행정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전산서기 · 농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		<u>77</u>	.	<u>76</u>	-1	

<u>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 전산서기보 · 농업서기 보 또는 운전서기보</u>	<u><신 설></u>	<u>7</u>	+7
<u>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u>	<u>4</u>	<u><삭 제></u>	-4
·	·	·	
<u>운전서기보</u>	<u>3</u>	<u><삭 제></u>	-3
·	·	·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89</u>	• <u>686</u>	-3
일반직 계	• • <u>688</u>	• • <u>685</u>	-3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 • <u>153</u>	• • <u>152</u>	-1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 • <u>205</u>	• • <u>204</u>	-1
•	•	•	
•	•	•	

행정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전산서기 · 농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u>69</u>	<u>68</u>	-1
<u>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u> <u>서기보 · 전산서기보 · 농업서기</u> <u>보 또는 운전서기보</u>	<u><신 설></u>	<u>7</u>	+7
<u>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u> <u>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u> <u>농업서기보</u>	<u>4</u>	<u><삭 제></u>	-4
·	·	·	
<u>운전서기보</u>	<u>3</u>	<u><삭 제></u>	-3
·	·	·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통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 농업서기보 · 사서서기 보 · 운전서기보</u> 또는 <u>방호서기보</u>	<u><신 설></u>	<u>3</u>	+3
<u>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 농업서기보</u> 또는 <u>사서서기보</u>	<u>1</u>	<u><삭 제></u>	-1
<u>방호서기보</u>	<u>1</u>	<u><삭 제></u>	-1
<u>운전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416</u>	<u>1,402</u>	-14
일반직 계	<u>1,416</u>	<u>1,402</u>	-14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u>89</u>	<u>88</u>	-1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u>256</u>	<u>253</u>	-3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402</u>	<u>398</u>	-4

행정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 전산서기 · 사서서 기 · 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u>498</u>	<u>493</u>	-5
<u>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u> <u>서기보 · 농업서기보 · 사서서기</u> <u>보 · 운전서기보</u> 또는 <u>방호서기보</u>	<신 설>	<u>133</u>	+133
<u>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u> <u>서기보 · 농업서기보</u> 또는 <u>사서서기보</u>	<u>119</u>	<삭 제>	-119
운전서기보	<u>7</u>	<삭 제>	-7
방호서기보	<u>8</u>	<삭 제>	-8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416</u>	<u>1,402</u>	-14
일반직 계	<u>1,416</u>	<u>1,402</u>	-14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u>89</u>	<u>88</u>	-1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u>280</u>	<u>277</u>	-3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398</u>	<u>394</u>	-4

행정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 전산서기 · 사서서 기 · 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u>478</u>	<u>473</u>	-5
<u>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u> <u>서기보 · 농업서기보 · 사서서기</u> <u>보 · 운전서기보</u> 또는 <u>방호서기보</u>	<u><신 설></u>	<u>133</u>	+133
<u>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u> <u>서기보 · 농업서기보</u> 또는 <u>사서서기보</u>	<u>119</u>	<u><삭 제></u>	-119
<u>운전서기보</u>	<u>7</u>	<u><삭 제></u>	-7
<u>방호서기보</u>	<u>8</u>	<u><삭 제></u>	-8
.	.	.	

